

대학연구자와 연구관리자를 위한  
이해충돌 길잡이

# 대학연구자와 연구관리자를 위한 이해충돌 길잡이

**대학연구자와  
연구관리자를 위한  
이해충돌 길잡이**

## 대학연구자와 연구관리자를 위한 이해충돌 길잡이

### 참고

본 자료는 2022년에 발간된 『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를 개정한 것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담긴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각 대학은 본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자체 상황과 여건에 맞는 이해충돌 예방 및 대응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목차

목적 및 활용 4

**1**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의 중요 5

**2** 이해충돌의 정의 및 종류 6

- 1. 재정적 이해충돌 7
- 2. 인적 이해충돌 15
- 3. 직무적 이해충돌 22
- 4. 지적 이해충돌 24

**3**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역할 26

- 1. 이해충돌의 관리 26
- 2. 이해충돌의 교육 33

**4** 연구자의 책임 34

- 1. 이해충돌의 관리 34
- 2. 연구자의 의무와 책임 38

부록 이해충돌신고서 양식(예시) 38  
 체크리스트 39  
 부록 41



## 목적 및 활용

2022년 「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길잡이」가 발간된 이후, 실제 연구현장에서 다양한 이해충돌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음

본 길잡이는 그동안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충돌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과 연구자들이 이해충돌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음

이 책은 단순히 이해관계의 개념이나 이해충돌의 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대학 현장에서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가 실제로 이해충돌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1장에서는 이해충돌의 예방과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을 설명함
- 2장에서는 이해충돌의 다양한 유형과 각 유형별 개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대표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자들이 이해충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3장에서는 대학이 연구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제도, 규정 등을 소개함
- 4장에서는 연구자 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의무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

이 책이 연구 현장에서 이해충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이해충돌 예방과 관련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길잡이가 이해충돌 마련 및 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바람

## 1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 ☑ 연구나 교육활동에서 이해관계는 항상 존재하나,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연구자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연구나 교육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는 이해충돌로 이어지는 경우, 연구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연구 진실성의 문제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등이 훼손될 수 있음

## 인간 대상자 보호의 문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생명의 안전, 인권, 사생활 등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

## 건강한 연구문화 저해

연구공동체에서 지켜야 하는 연구자원과 업적의 공정한 배분, 연구자 간의 신뢰와 협동, 연구자의 연구 동기 등을 저해할 수 있음

## 학문연구의 신뢰 문제

연구 결과의 편향으로 인해 학문에 왜곡과 장애가 발생하고, 연구자들 간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음

## 학문후속세대 양성 문제

학문 후속 세대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국가인재 양성에 저해를 초래할 수 있음

- ☑ 연구자는 연구 및 교육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된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충돌이 연구·교육·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 2 이해충돌의 정의 및 종류

☑ (정의) 이해충돌이란 연구자의 연구 및 교육활동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함<sup>1)</sup>

☑ (종류) 연구 또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은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재정적 이해충돌**  
연구자가 소속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조직으로부터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된 경우<sup>2)</sup>

**인적 이해충돌**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연구 수행 전 과정이나 연구기회, 연구자원, 업적배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무적 이해충돌**  
연구자가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혼동하여 연구자 본연의 역할보다 부수적 역할을 우선하는 경우

**지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이념, 신념, 종교, 지적 성향 등에 따라 연구를 편향적으로 수행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1) 호주국립보건연구원, 2020, 호주의 책임있는 연구 수행 강령과 세부 지침, 한국연구재단, p.109-122.  
2) 이호빈 외, 2019,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p. 30.

### 참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2023. 2. 23.) - 이해충돌(이해상충)

각 기관에 따라 이해충돌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도 존재함.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2023.02.23. 시행) 제18조에서는 이해충돌을 “이해상충”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다음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제18조 (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1 재정적 이해충돌

☑ (정의) 연구 및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중요성) 재정적 이해충돌은 연구 및 교육 활동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해충돌 유형이므로 우선적으로 예방 및 관리되어야 함

### 예시 재정적 이해충돌의 신고 대상 예시 - 연구장비 및 인력 지원

A기관이 자신의 연구를 도맡아 수행해 왔던 B기관 소속 연구자 C가 A기관의 연구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① 연구자 C에게 새로운 장비를 빌려주고, ② 인력 지원 차원에서 A기관의 인력을 제공한 경우,

**1 연구자 C에게 새로운 장비를 빌려주었다면,** 연구자 C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해도 간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연구의 편향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해충돌 신고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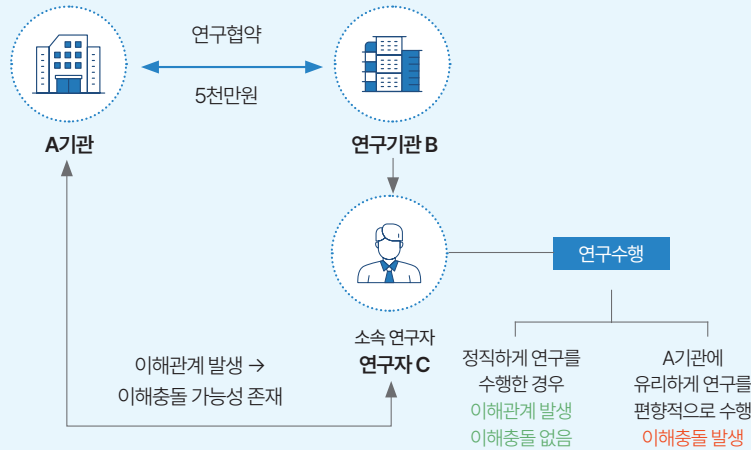
**2 연구자 C에게 인력을 제공했다면,** 이는 연구자 C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해도, 연구와 관련된 자에게 간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연구의 편향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해충돌 신고 대상”임

**예시 재정적 이해충돌 - 이해충돌 발생가능성과 실질적인 이해충돌**

그림과 같이 A기관이 B연구기관의 연구자 C에게 연구협약을 통해 5천만원을 지원하고 특정 연구를 의뢰했다고 가정할 경우,

• 돈을 주고 연구를 의뢰한 순간 A기관과 연구자 C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함**

- 1 연구자 C가 연구를 진실되게 수행했다면 → 이해관계는 있으나 이해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음
- 2 그러나 연구자 C가 A기관에 유리하도록 편향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면 →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하였음**



☑ **(신고 대상)** 연구자 또는 연구자의 특수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경우

- 소속기관 외에 기관, 조직, 단체로부터 **직접적인 보수**를 받는 경우
  - 1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급여, 연구비, 자문료, 강연료, 회의비, 장학금 등을 받을 경우
  - 2 기업 또는 단체에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3 직무와 관련<sup>3)</sup>한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현금, 주식(상장, 비상장), 스톡옵션, 유가증권, 소유권 등을 받는 경우

3) 8p <용어설명> 직무 관련(자)이란? 참고

• 소속기관 외에 기관, 조직, 단체로부터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

- 1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여행경비, 항공권, 숙박비, 식비, 교육훈련비, 상품권, 접대, 선물 등을 받는 경우
- 2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연구인력, 장비, 시설, 재료 등을 지원받는 경우
- 3 연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이사 또는 특정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 4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교육에 사용되는 기기(교과서 제외)를 지원받는 경우

☑ **(예방 및 대응 방안)** 재정적 이해관계에 놓이게 된 경우, 연구자는 반드시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소속기관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관리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3장 기관의 역할 참고)

**용어설명 직무 관련(자)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제18191호] (2022. 5. 1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비 등 공적 재원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공직자에 준하는 공적 책무를 가지므로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공직자 수준의 이해충돌 예방·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함**

**Q&A 재정적 이해충돌 – 직접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Q 연구자가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무조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A** 소속기관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고,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절차(협약 및 신고)가 아닌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차명(연구자의 지인, 친인척, 기타 법인, 개인 기업 등)을 이용하여 계약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연구자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자료료, 강연비, 회의비 등을 받고 외부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A** 연구자의 외부활동을 소속기관에 알리고 규정의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해할 정도로 과도한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소속기관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 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연구자 단독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로열티를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연구자가 대학 등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비록 기업과 협업을 통해 발명한 경우라도 소속 기관에 발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연구자가 발명한 연구가 직무적 관련이 있는 경우는 소속기관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해당 기관의 내규 등에 따라 동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고 이 특허권의 활용으로 발생한 로열티는 해당 기관 내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직무적 연관성이 없는 자유 발명인 경우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소속기관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동 발명의 활용 권리와 그에 따른 수익금은 연구자(발명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 내규가 동 수익금을 기관과 연구자가 공유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Q 연구자가 투자 목적으로 어떤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연구를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해충돌에 해당하나요?**

**A** 연구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업으로부터 연구를 수주받으면 연구 결과가 주가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해충돌이 존재합니다. 특히 보유 지분이 크거나(구체적인 기준은 기관 규정에 따름), 연구 내용이 기업에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면 이해충돌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회피하거나 이를 소속기관에 알리고 연구결과에도 주식 보유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자가 개인 자산으로 투자해 구입한 주식이 아닌 연구관련 보상으로 주식을 받은 경우라면 기업의 성과와 연구자의 이익이 직접 연결되므로 실질적 이해충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자는 반드시 소속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필요시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Q&A 재정적 이해충돌 – 간접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Q 연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기업으로부터 연구인력이나 장비를 지원받은 경우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기업 등이 연구를 위해 연구와 관련된 자원(연구인력, 장비, 재료 등)을 했다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결과와 발표에 있어서 연구를 지원한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왜곡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되고, 연구결과 발표 시 기업의 지원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참고 연세대학교의 이해충돌 범위**

연세대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비용, 자료료, 연구기기, 지분이익이나 스톡옵션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를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연구자의 직위와 관계없이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안내함
- 1,000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이 아닌 개인으로 제공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안내함

역할	<input type="checkbox"/> 연구책임자	<input type="checkbox"/> 공동연구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연구자
<input type="checkbox"/>	지원기관으로부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용이나 교육 보조금, 연구기기, 자료 또는 사례금 형태로 1,000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과 계약없이 제공 받았었습니다. 총 금 액:		
<input type="checkbox"/>	지원기관의 지분이익이나 현금(급여) 또는 스톡옵션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 받았었습니다. 총 금 액: 종 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1,000만원 이상 또는 5%가 넘는 지원기관의 주식 지분 또는 시험물질과 같은 연구대상의 소유권 지분을 제공 받았었습니다. 총 금 액: 종 류:		
<input type="checkbox"/>	지원기관에 공식/비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예: 사장, 이사, 고문 등) 기 관 명: 직 위:		
<input type="checkbox"/>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소속된 회사가 위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출처: 연세대학교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연구자 연구윤리 이해충돌 신고(심의) 절차 안내

**사례 A 가슴기 살균제 사건**

일명 'A 가슴기 살균제 사건'의 소송과정에서 활용된 연구보고서는 재정적 이해충돌이 동 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2차 피해와 고통을 주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S대학교 B교수는 주식회사 A로부터 '가슴기 살균제의 안정성평가' 연구를 의뢰받고 동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계약(연구용역비 2.5억원)을 체결하였다.

B교수는 동 연구용역비 이외에도 A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지급 받았다. B교수는 A측의 요구에 따라 A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누락한 연구보고서를 A측에 제출하였고, A는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소송에서 동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A측은 소송에서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실험데이터를 근거로 A의 가슴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다.

출처: 헤럴드경제, 2017.01.09. 가슴기 살균제 연구조작 재발 방지.. XX대 서약서 도입

**사례 유전자 가위 특허를 통해 본 직무발명과 이해충돌**

A대학교 C교수는 B연구원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유전자 가위 특허기술을 개발하였다. C교수는 이 특허를 발명한 발명자지만, A대학교와 B연구원에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D의 명의로 특허를 이전하였다.

대법원은 직무발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B연구원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등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공공기관 소속 연구자가 직무적 발명한 특허를 사적으로 이전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출처: 한경 BIO Insight, 2022.12.01. D 창업자 C 전 B 단장, 선교유에 판결

**참고 교원창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 (고려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서 대학 내의 창업 및 기업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육성하고 있음

- 대학 내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속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지식재산권 및 인프라의 사용 및 이익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해충돌의 종류) 소속기관 내에서 연구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인적, 직무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정적 이해충돌)

- 1 직무발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원 창업 이후 전용 실시권 계약 및 기술이전의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대학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교원은 연구진실성의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은 객관적인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적절한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교원 창업자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원의 신분이므로 창업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기술에 대해 교원 창업기업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
  - 교원창업 겸직 상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대학과 창업기업 모두에게 일정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단, 대학은 이에 관한 절차, 비용 등 관련 내용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교원 창업자가 교원 신분으로서 수행한 보안과제를 창업기업에 활용하는 경우
  - 교원 신분으로 보안과제를 수행했다면, 기관 및 국가의 승인을 받고 창업기업에 활용해야 함

☑ (인적 이해충돌)

- 1 교원 창업자가 명확한 기준과 보상계약 없이 지도학생에게 연구실과 창업 기업의 업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
  - 교원창업자는 원칙적으로 대학원생을 교원 창업 기업의 업무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함 단, 학생의 연구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시킬 수 있으나,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교원 창업자는 학생지도에 있어 창업기업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

- 2 학생이 연구실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기업의 자본 배분
  - 학생 창업자가 연구실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교원은 학생 창업자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창업기업의 자본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 (직무적 이해충돌) 대학의 교원이면서 기업의 창업자로서 겸직이 가능하나 단, 기업 활동이 교원 본연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여야 함<sup>4)</sup>
  - 자신이 창업 또는 근무하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원의 직무를 유예·경감 받고자 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Q&A** 교원의 창업 시 이해충돌 예방 관련

**교원이 창업한 기업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원이 창업한 기업도 연구비를 획득하여 연구수행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연구수행 과정에서 소속 대학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소속대학을 통해 과제를 수주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대학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결과물은 연구과제 수행기관(창업기업)에 귀속되나,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제 수행 전이나 수행과정에서 소속대학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원이 창업한 기업으로부터 교원으로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원 자신이 창업한 기업으로부터 교원 자신이 대학소속으로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연구수행의 공정성과 진실성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대학과 연구과제의 범위와 연구결과물의 권리귀속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고혁진 외, 2023, *교원의 기술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 한국연구재단, p.16-49.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983호) (2025. 5. 27.) 제16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2 | 인적 이해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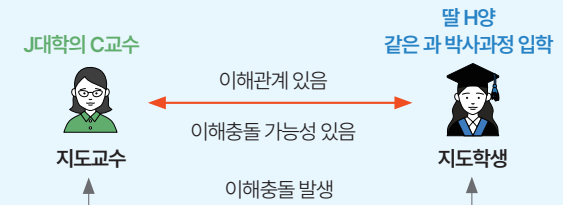
- ☑ (정의)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갈등 등의 사적인 이해 관계가 연구의 기회, 수행,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문제점) 연구기회, 자원, 업적 평가 등이 불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연구의지를 저해하고 연구수행 또는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음

**예시 인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과 실질적인 인적 이해충돌**

그림과 같이 J대학에 재직 중인 C교수의 딸 H양이 같은 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고 가정하자. 이 상황에서 C교수와 H양 사이에는 인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해관계는 있으나 이해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H양과 자신의 아버지인 C교수 사이에 지도교수-지도학생 관계가 성립된다면, →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에게 평가를 수행하며 연구기회를 부여하기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적 이해관계가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신고대상) 연구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
  - 연구자의 가족 또는 친밀한(또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해
    - 1 고용·평가·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2 연구과제, 연구비 평가, 수주, 고용 등을 평가를 수행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연구자가 특수관계인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1 국가연구비가 투입된 연구를 계획하거나 수행하고자 할 때, 특수관계인을 공동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2 연구자의 특수관계인과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 위의 경우, 연구자는 반드시 이를 소속기관에 알리고 적합성 여부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함

**용어설명** 특수관계인의 범위

연구윤리적 측면에서 통상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또는 미성년자를 의미하나, 대학 등 연구기관의 사정에 맞게 범위 확대 가능

출처: 한국연구재단,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1. 8. 11., 2차 개정)

**예시** 인적 이해충돌

- 1 A교수는 전공이 다른 자신의 배우자 B씨가 박사과정을 마치자, 자신의 연구실에 "연구교수"로 채용하고자 하였음  
→ 배우자라는 직접적인 관계에서, 객관적인 고용 절차 없이 가족관계 기반 특혜로 볼 수 있어 인적 이해충돌에 해당함

A교수(교수, 고용 결정권자)      배우자      B교수(배우자, 연구교수 채용)

이해충돌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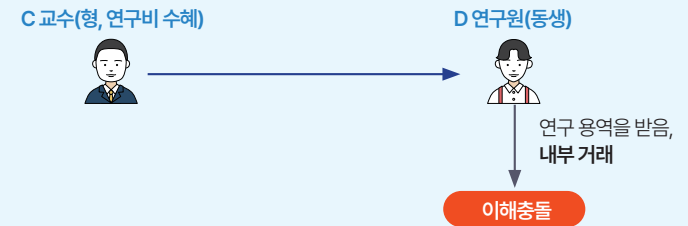
- 2 B교수는 자신의 아들이 동대학에 입학하자, 자신의 아들을 참여연구자로 이름을 올리고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함  
→ 직계가족을 연구원의 일원으로 포함한 경우, 연구원 선발에 공정성이 저해될 뿐 아니라 평가나 결정 권한이 이해당사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인적 이해충돌에 해당함

C교수(아버지, 연구책임자)      아들

연구계획서에 이름을 올림

이해충돌

- 3 C교수는 연구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를 수행하던 중, 연구계획서에 없던 추가연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연구원에 근무하는 자신의 동생 D씨에게 용역을 주었음. 이후 연구지원기관의 정산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조사가 진행됨  
→ 인적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국가연구비 사용에 있어 "내부거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



**참고** 내부 거래의 정의

**1** 내부거래란?

- 1)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①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②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 2)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 예시에는 ①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가족 관계인 경우, ③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경우, ④ 인력·자금·영업시설이 공유되는 경우, ⑤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⑥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임

**2** 내부거래 중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는 계열사 등이 단독 판매처인 경우
- 보안 및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 경제성 측면에서 외부에서 동등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납기 불확실한 경우 등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Q&A** 인적 이해관계 관련 질문

**연구자의 가족 또는 친밀한 관계란 무엇인가요?**

연구자의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친밀한 관계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사제 기간, 동문, 선후배, 전·현직 직장동료, 연인, 동향 등을 포함하여 제3자가 보기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관계를 말합니다.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고용·평가·감독 등의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은 연구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교원, 직원 등으로 추천 또는 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감독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처리, 논문심사, 연구계획서 심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대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는 활동 자체는 이해충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적처리, 논문지도, 연구기회 부여 등에서 제 3자가 보기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에서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로체스터 대학교의 고용관계에서의 이해충돌 - 친족 및 사적관계의 채용 (Conflicting Employment Relationships - Nepotism and Consensual Romantic Relationships)**

**이해충돌 고용관계 금지**

- 1 대학교 구성원이 사적인 관계(예: 친족, 배우자, 동거인, 연인, 사업 파트너, 절친 등)에 있는 사람의 고용, 승진, 감독, 평가 또는 급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 2 또는 이러한 사적 관계가 대학교의 교육 또는 업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예시 사례**

- 자신과 개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을 직접 감독하는 경우
- 자신과 사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과제를 평가하거나 성적을 매기는 경우
- 사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채용 또는 승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사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승진 또는 종신교수 심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자원(연구비, 시간, 기회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연인 관계의 동료가 직장에서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 표시를 하거나 갈등을 반복하거나, 업무나 교육 환경에 크게 영향을 줄 경우

**잠재적 친족 고용 상황(Potential Nepotism Situations) 금지**

아직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지만, 미래에 영향을 줄 가능성 또는 인식 가능성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분류됨

- 동료 관계인 두 직원이 같은 부서에 장기 근무하며, 향후 서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부모 교수와 자녀 학생이 같은 학과 소속이며, 현재는 평가 및 지도를 하지 않지만, 미래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
- 또는 해당 교수의 학과 내 관계가 자녀를 우대하도록 인식될 수 있는 상황

“친족 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을 소속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함  
만약 다른 교직원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된 상황이라면 이를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음

출처 : 로체스터 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rochester.edu/policies/policy/nepotism>

**사례 친인척의 대학원 입학 시험에 관여한 교수**

교수 B씨는 대학원 입시에 자기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입학시험 문제 출제에 참여하고, 또한 조카의 답안지를 직접 채점하였다. 이 대학은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학교에 지원할 경우 입시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B씨는 이를 학교에 알려서 해당 업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므로 고의로 인적 이해충돌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

출처 : 한국경제 TV, 2020.08.06, XX대 XXX 교수 기소. “아들, 조카 대학 편입·대학원 부정 입학”

**사례 자녀의 진학을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수**

L교수는 자신의 딸을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 자신의 대학원생을 동원해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작성시켰고, L교수의 딸은 이를 바탕으로 D대학에 합격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딸을 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L교수의 조교에게 SCI급 논문을 쓰게 하여 자신의 딸을 단독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L교수는 실험데이터까지 조작하여 논문을 완성한 후 딸을 단독저자로 등재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E대학 대학원에 합격하였다.

자신의 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학의 공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교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인적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입시부정이기도 하다. 한편, L교수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연구부정 판정을 받고 해임되었다.

출처 : 이데일리, 2024.07.18, 제자 대필 논문으로 딸 차전원 보낸 전 약대교수, 실험

**사례 (기사) 국가 R&D 과제 수행 시 가족을 참여시킨 연구책임자**

**<가족끼리 국가 R&D 한다고?...인건비 누수 감시는 '깜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겠다면서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자신의 가족을 연구팀원으로 삼은 '연구 책임자'가 지난 4년간 100명에 육박하며, 이런 가족 연구자들에게 나랏돈으로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이 2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책임자의 배우자 한 사람이 3년간 1억 3,000만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중략)

가족 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은 모두 25억 5613만원이었다. 전체 가족 연구자 96명 가운데 3분의 2(64명)가 받았다. 이들은 대개 3~5년 동안 연구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 1억원 이상을 받는 가족 연구자도 4명이나 있었다. 생물학 연구를 하는 A연구 책임자의 배우자는 2022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1억3,00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3년 동안 매년 4,000만원 이상을 받는 셈이다. (이하 생략)

출처: 경향신문, 2024.10.17, 가족끼리 국가 R&D 한다고?... 인건비 누수 감시는 '깜깜'

☑ **(예방 및 대응 방법)**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내부 거래, 친족 고용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이해충돌에 해당함

- 특수 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기관장은 다음에 입각해서 연구참여를 승인해야 함
  - 현재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연구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및 공고문 등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기준으로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한국연구재단) -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기준**

**제25조(연구개발 과제의 성실한 수행 등)**

⑩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등(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이내의 친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자인 저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의 방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 사항을 승인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출처: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 등) 협약서 및 공고문(2025) 일부 발췌

**예시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대체불가능성 기준의 예시**



본 내용은 집필진이 참고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므로 연구기관 등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기관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수행의 전문성**

“해당 인물이 반드시 과제에 참여해야 연구 목표 달성, 일정 준수, 성과 창출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함

- ① 최종학력, 관련 전공, 전문 자격증(국가·국제 자격 포함) 등
- ② 해당 주제 관련 SCI(E) 논문, 특허, 실적, 주요 프로젝트 경력 등
- ③ 연구과제에서 맡을 역할에 부합하는 현장 경험 또는 유사 과제 실적 등
- ④ 타 연구자 대비 우위에 있는 특화된 기술, 방법론, 장비 운용 경험 등

**2 연구수행 필요성**

“해당 인물이 반드시 과제에 참여해야 연구 목표 달성, 일정 준수, 성과 창출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함

- ① 과제 목표, 연구 범위, 세부 실험·분석 등에서 필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객관적으로 설명
- ② 과제 전체 또는 특정 세부 과업 수행에서 중심적 기여가 요구됨을 입증
- ③ 해당 인물의 참여 없이는 연구지연, 품질 저하, 사업실패 등 위험이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

**3 대체 불가능성**

“해당 인력을 대신할 적합한 인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충원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 ① 채용 및 모집 결과에 따른 대체 인력 부재
  - 해당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 인력 채용 공고, 사내 공지, 외부 지원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유사한 역량을 가진 인재의 지원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 그 근거로 공고문, 공고기간, 채용 과정 등을 자세히 입증하여 제출함
- ② 해당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부족 현황 제시(예: 학회 데이터, 학회 인력 풀, 산학협력단 데이터 등)
- ③ 창시자 및 주요 개발자로서의 독점적 지식 및 경험 보유
  - 해당 연구 주제나 장비·기술·시스템의 창시자 또는 주요 개발자로서, 연구팀 내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점적 지식·경험을 소유(관련분야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핵심 원천기술 등 보유)했음을 입증해야 함
- ④ 내부 역할 구조의 한계 증명
  - 기존의 연구팀 내 적합한 역할 분담 구조가 부재함을 증명해야 함

### 3 | 직무적 이해충돌

- ☑ **(정의)** 연구자가 여러 기관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경우
- ☑ **(문제점)** 연구자가 소속기관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 본연의 목적인 연구와 교육활동 등이 저해될 수 있음
- ☑ **(신고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직무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1 연구자가 외부연구나 외부강연을 중시하여 원 소속기관에서의 연구 및 교육에 소홀한 경우
  - 2 연구지원 기업 및 단체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3 연구자가 원 소속기관의 다른 연구원, 직원, 대학원생 등을 외부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 4 원 소속기관에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나 연구자원을 개인적인 목적 또는 외부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참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2호] (시행 2025. 1. 21.)**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삭제
-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5) 이효빈 외, 2023,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p.16-49.

- ☑ **(예방 및 대응방안)** 각 대학에서는 외부강연이나 외부 활동과 관련하여, 시간, 횟수, 금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외부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 (예시) 주 10시간 이상의 강연, 창업활동 제한
  - (예시) 외부 강연이나 자문 등의 활동은 월 10회 이하로만 허용

Q&A

직무적 이해충돌 관련 질문



**연구자가 A기관의 사외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얻은 바가 없으나, A기관의 업무(사업)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나요?**



A기관의 사외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내부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취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A기관의 연구과제를 다른 사람보다 쉽게 수주하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연구 결과를 보고하거나 외부에 발표할 때는 A기관의 사외 이사직 수행 내역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4 | 지적 이해충돌

- ☑ **(정의)** 특정 연구분야나 이론적 확산, 종교적, 철학적·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사, 평가 등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 **(문제점)** 다양한 견해와 사고, 생각 등의 공존을 통해 학문의 발전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이론, 편향된 사고 등에 매몰되어 다른 견해나 사고의 가치를 제한할 수 있음
- ☑ **(예방 및 대응방안)** 연구자는 지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회피해야 함
- ☑ **(공개 또는 관리의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지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1 학술지 심사 등에 있어 심사자 개인의 이론적 편향, 학문적 신념·이해입장 등과 반대되거나 경쟁하는 연구 논문을 심사하게 된 경우
  - 2 연구자 본인이 신뢰하는 이론 또는 어떤 사상에 부합하도록 연구를 편향적으로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위·변조, 왜곡되게 기술하거나 해석하는 경우

#### 참고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규정' (2023. 12. 8.) - 지적 이해충돌(상충)

**제46조(지적상충)**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적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동연구의 제안, 심사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 예시 출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 1. 편집인의 이해충돌

- 1 편집자/발행인이 자신의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
  - 편집자/발행인이 자신이 편집자로 있거나 발행하는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원고를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신이 동료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원고의 최종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됨
- 2 편집자/발행인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
  - 저자의 원고와 지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발행인/편집인은 해당 원고에 대해 최종 게재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됨<sup>출처1)</sup>
  - 저널 편집위원 중 한 명과 동일한 기관의 소속 저자가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논문은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의 선정과 최종 결정을 처리해야 함
  - 편집위원 중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논문을 투고하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논문은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의 선정과 최종 결정을 처리해야 함<sup>출처2)</sup>

##### 2. 동료심사자의 이해충돌

동료평가에서의 이해충돌이란, 심사자가 저자 또는 연구자체와의 관계로 인해 판단과 객관성이 영향을 받아 편향되거나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함

- 1 동료심사자와 사적인 관계가 있는 저자가 투고한 논문을 심사하는 경우
  - 가족, 친구, 멘토, 가까운 동료와의 밀접한 개인적인 관계나 저자와의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
  - 과거/현재 공동연구를 수행했거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2 동료심사자와 재정적 이해충돌에 있는 논문을 심사하는 경우
  - 해당 연구와 관련된 자금 지원, 주식 소유, 자문 등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사자가 투고된 원고에 대해 이미 강한 선입견이나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처 1) 국제학술지출판윤리위원회, 2022.

Managing an editor's undisclosed conflict of interest in a published article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case/managing-editors-undisclosed-conflict-interest-published-article>

2) 국제학술지출판윤리위원회, 2024.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authors and editors,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case/conflicts-interest-between-authors-and-editors>

# 3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역할

## 1 이해충돌의 관리

- ☑ **(내부규정)** 소속 연구자가 이해관계와 이해충돌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고 시행해야 함
- ☑ **(이해충돌 신고양식)** 이해충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연구자가 소속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양식을 제공해야 함
- ☑ **(이해충돌 확인)** 연구자가 신고한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이해충돌심의회)** 이해충돌의 예방, 발생 시 대응 가능 및 신고 접수 창구로 이해충돌 심의회를 만들고 보고된 이해충돌을 확인하여 심의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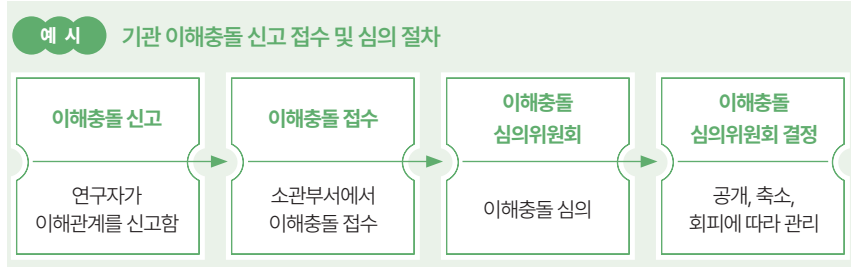
### • 이해충돌심의회 역할

- ① 보고된 이해충돌 내용을 심의함
- ② 심의한 이해충돌을 관리하고 대응함
- ③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집행

### • 이해충돌 소관부서

이해충돌심의회는 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감사부, 교무처 등에서 운영할 수 있음

- ☑ **(이해충돌심의회 결정)** 연구자가 신고한 이해관계 사안 중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은 연구자 및 기관 관계자가 상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공개·축소·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이해충돌은 ① 이해관계를 공개하거나, ②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이해충돌 야기 가능성을 낮추거나, ③ 이해당사자가 '회피' 또는 '배제'되어 이해충돌을 제거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음



**참고**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이해충돌심의회 운영 규정, (2025. 10. 28.)'

**제3조 (이해충돌의 보고)**  
 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 연구처(연구윤리센터)에 그 사유와 내용을 적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자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  
 2. 연구자가 미성년자(19세 이하)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할 때  
 ② 연구자는 위 제1항의 이해충돌 이외에 연구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교 연구처(연구윤리센터)에 그 사유와 내용을 적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이해충돌의 관리)** 본교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이해충돌심의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연구처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등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연구처장, 연구윤리센터장과 산학협력부단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10.2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윤리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2 (간사 및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윤리센터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업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자가 보고한 이해충돌 사안, 본교가 인지한 이해충돌 사안, 제보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송부받은 이해충돌 사안
  - 2.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연구과제 심사 시 이미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심의를 거쳤음을 신고한 경우, 동일한 이해충돌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심의)**

- ① 회의 및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심의는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의 중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부서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제척 및 회피)**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연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연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판정)**

- ① 위원회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1. 이해충돌이 없거나 이해충돌이 있더라도 연구의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를 승인한다.
  - 2. 이해충돌이 있더라도 연구의 수행에 문제가 없으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수행을 승인하되, 다음의 추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가. 관련자(IRB 연구 시 연구대상자/ 논문 발표 시 학회 등)에 대한 이해충돌 공개
    - 나. 이해충돌 관련자의 연구 배제
    - 다. 연구 관련 자료 점검
    - 라. 연구 결과보고의 편파성, 객관성, 포괄성의 평가에 대한 검토
    - 마. 연구 수행 관련 경제적 이익의 제한
    - 바. 기타 공정한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3. 이해충돌로 인하여 연구의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연구에 대하여 판정할 경우에는 전문성, 역할, 활용 필요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가 연구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 ① 연구자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후속조치)** 위원회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심의결과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연구의 중지기간 연장, 연구의 철회,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주요사례별 대응책)**

**1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자신의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은 재정적·인적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연구 결과의 편향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아야 함
- ⇒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연구수행의 전문성, 연구수행 필요성 및 대체 불가능성 등을 입증하여 이해충돌심의회위원회 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참고** **단국대학교 「특수관계자 연구참여에 관한 지침」(2022. 1. 1.)**

- 제6조(참여제한의 예외)** ① 특수관계자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고, 과제 특성상 참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 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단국대학교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상기 특수관계자는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참여연구원 신청 시)

상기 특수관계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의 연구과제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문가활용 신청 시)

참고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소속 연구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24. 10. 28.)**

**제3조(연구자의 의무)** ① 전북대학교 소속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적용대상 연구과제에 사적 이해관계자를 참여연구자 등으로 참여시킬 수 없다.

② 전북대학교 소속 연구자는 적용대상 연구과제에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음에도 전북대학교 학술 연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한 뒤 참여연구자 등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공 지식과 자격을 구비하고 연구 참여 인력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적이해관계자를 해당 적용대상 연구과제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적용대상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정업무 및 단순 실험보조로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없다.

**제4조(심의 신청절차 및 이의신청)** ① 전북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사적이해관계자를 제3조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2주일 전까지 "사적이해관계자 연구활용을 위한 심의 신청서"(별지 1)를 직근상급자를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적용대상 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신청)
2. 적용대상 연구과제의 수행 중 연구활동 신규 참여 또는 참여자
3. 전문가 활용 등 일시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 시
4. 기타 사적이해관계자가 적용대상 연구과제의 결과물에 공동연구자가 되는 경우, 논문투고 신청, 학술발표 및 저술발간 시(다만 소위원회가 해당 적용대상 연구과제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심의 면제)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자 또는 연구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된 연구를 수수받는 경우
- 연구자가 연구비 외에 자문료 등을 받은 경우
- 동일 주제로 여러 기관에서 중복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중 연구비를 수령하는 경우
  - ⇒ 소속기관에서는 연구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점검하고, 연구결과의 편향성, 객관성 등을 평가하여 연구가 정직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함
  - ⇒ 모니터링이 불가능할 경우, 책임연구자의 경우 공동연구원으로 그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연구자가 진실되게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연구자가 창업한 회사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연구를 의뢰한 경우
- 연구 의뢰자가 연구자로부터 특정 연구결과를 기대하는 경우
- 연구의뢰자(기관)와 연구자간의 특수한 인간관계 또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연구의뢰자가 연구자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연구를 의뢰한 경우
- 해외기관에서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연구 수행을 의뢰하는 경우
  - ⇒ 연구가 진실되게 수행되기 어렵다면, "회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책임연구자가 아닌 공동연구원으로 그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호주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 강령을 뒷받침하는 지침 : 이해관계 공개 및 이해충돌 해결**

- 1 연구를 발표하거나 출판할 때 이해관계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 2 연구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독하는 데 적절한 사람을 포함시키기
- 3 연구와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에서 스스로 회피하도록 요구하기
- 4 연구자에게 연구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역할을 바꾸거나 줄이도록 요구하기
- 5 연구자에게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기

출처: 호주국립보건연구회, 2020, 호주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강령과 세부 지침, p.109-122, 한국연구재단.

**예시 이해충돌 심사표**

본 내용은 집필진이 참고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므로 연구기관 등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기관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 대상자:
- 소속/직위:
- 연구/과제명:
- 이해충돌의 내용(요약):

평가 항목	구분	체크
이해관계의 직접성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가족/배우자/친척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지인, 동문, 기타 사적 인연 등)	
이해관계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 정도	<input type="checkbox"/> 관련 없음 <input type="checkbox"/> 경미 <input type="checkbox"/> 주의 필요 <input type="checkbox"/> 심각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관련 없음 <input type="checkbox"/> 대체 가능성 입증 <input type="checkbox"/> 전문성 입증 <input type="checkbox"/> 연구수행 필요성 입증	
이해관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정도	<input type="checkbox"/> 관련 없음 <input type="checkbox"/> 경미 <input type="checkbox"/> 주의 필요 <input type="checkbox"/> 심각	
사전 신고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전에 신고함 <input type="checkbox"/> 신고하지 않음	
내부 규정 위반 여부	<input type="checkbox"/> 명백한 위반 <input type="checkbox"/>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위반 없음	
공정성 침해 위험	<input type="checkbox"/> 평가·채용·승진 등 직접 영향 <input type="checkbox"/> 간접 영향 <input type="checkbox"/> 영향 없음	
반복/누적 사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처음 발생함	
평가의견 (정성평가)		

**■ 심의결과**

- 공개(Disclosure) 
  - 연구 발표·출판 시 이해관계 대중 공개
  - 소속기관·연구팀에 이해관계 서면 통지
- 회피(Recusal) 
  - 연구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자발적·강제적 회피(위원회/심사/평가 등)
  - 해당 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역할 회피
- 축소(Reduction) 
  - 연구자의 역할 변경 또는 축소(책임자→참여자, 주요결정권 축소 등)
  - 연구자 및 관계인의 연구비·성과배분 등 권한 조정
- 이해관계 포기(Forfeit) 
  - 연구자에게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 포기 요구(주식 지분 처분 등)
- 기타 
  - 이해충돌이 중대하지 않아 추가 조치 없이 연구 지속 승인

**■ 심의결과외 근거**

**■ 구체적 관리방안 및 조건(필요시 상세기재)**

예) 연구 수행 단계에서 연구내용을 신고하여 연구가 무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힘

**■ 위원회 심사 및 승인일자:**

심의자	(인)
심의자	(인)
심의자	(인)

**2 | 이해충돌의 교육**

- 기관은 교원, 연구자, 행정직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와 이해충돌을 교육하고 예방 및 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함
- 기관은 내부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이해충돌에 대해 알려주고 신고양식을 작성하는 법,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법 등을 교육해야 함

# 4 연구자의 책임

## 1 이해충돌의 관리

☑ **(재정적 이해충돌)** 연구자는 재정적 이해충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축소하거나 회피해야 함

• **(주의 또는 회피해야 할 연구 활동)** 국가, 국민,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재정적 이익 또는 사회적 지위 향상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회피해야 함

- ① 국가안보, 국방, 외교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국가에 위협이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②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
- ③ 내·외부 기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유출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사례 연구자의 재정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 충돌**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K연구원은 해외기업으로부터 현재 연봉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제안받았다. K연구원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해외기업으로 이직하였다. 그러나 2년 만에 해당 기업은 K연구원의 기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K연구원을 해고하였다. K연구원은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기업으로 재취업하려고 하였으나,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이유로 입국이 금지되었다. 연구자들은 자신에게 아무리 높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만약 첨단 산업기술 보호가 어렵고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면 해당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 **(회피가 바람직한 경우)** 연구자는 재정적 이익이 연구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해당 연구나 교육활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 자신이 창업한 회사 또는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연구를 의뢰한 경우
  - 2 의뢰자가 연구자로부터 특정 연구결과를 기대하고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 3 연구의뢰자(기관)와 연구자 간의 특수한 인간관계 또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연구의뢰자가 연구자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연구를 의뢰한 경우
- **(공개해야 하는 경우)**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금전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공개해야 하는 대상)** 연구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을 포함하여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에게 모든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연구지원기관, 협력기관(공동연구의 경우) 등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에 공개해야 함
  - 2 학회, 학술지, 학위논문 등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함


**예시 연구 결과의 발표**

- 1. **(보고서 명시-연구비 지원)** 본 연구를 수행한 이OO과 조OO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김OO은 (주)대한OO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본 연구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2. **(보고서 명시-연구비 지원)** 본 보고서는 (주)OO개발에서 의뢰하여 연구비를 전액 지원받고 수행되었음
- 3. **(보고서 명시-재정적 이해관계)** 본 보고서의 연구책임자 박OO은 연구지원기관인 (주)OO기술의 주주이면서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음
- 4. **(논문 명시-경비 지원)** 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주)OO제약에서 여행경비\* 일체를 지원받았음 (\* 여행경비:항공권, 숙박비, 식비 등)
- 5. **(논문 명시-COI가 없는 경우)**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s of interest.

- 3 (공동연구자)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연구자에게 자신의 재정적 이해충돌을 밝히고 협의해야 함

☑ **(인적 이해충돌)** 연구자는 인적 이해충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축소 또는 회피해야 함

- **(회피가 바람직한 경우)** 미성년자, 친인척, 가족, 그 외에 가까운 지인 등을 부당하게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승진, 고용, 연구비 지원 심사, 연구심사, 연구참여 등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공개해야 하는 경우)**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친밀한 관계 또는 대립적인 관계 등이 연구 수행 또는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개해야 하는 대상)**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에게 공개해야 함.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연구지원기관, 협력기관(공동연구의 경우) 등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관리·지원하는 기관에 공개해야 함
  - 2 학회, 학술지, 학위논문 등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인적이해 관계를 밝혀야 함
  - 3 (공동연구자)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연구자에게 자신의 인적 이해충돌을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함

 **예시 인적 이해충돌의 공개**

1. 저자 독고OO과 채OO은 모녀지간으로 채OO은 현재 OO고등학교에 재학 중임


2. 본인 남공OO은 서OO과 사제지간으로 본 연구비 지원심사에 지원한 서OO의 연구계획서 심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회피를 신청합니다.

☑ **(직무적 이해충돌)** 연구자는 직무적 이해충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회피하거나 공개해야 함

- **(회피가 바람직한 경우)**
  - 1 외부활동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본연의 직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2 교수가 학생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활동에 참여시키는 경우
- **(공개해야 하는 경우)** 연구자 본인이 외부 활동(사외 이사, 강연, 창업 등)을 하거나 대학원생 등을 외부 활동에 활용하는 등 직무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공개해야 하는 대상)**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에게 공개해야 함.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연구지원기관, 협력기관(공동연구의 경우) 등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관리·지원하는 기관에 공개해야 함
- 2 학회, 학술지, 보고서 등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직위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밝혀야 함
- 3 (공동연구자)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연구자에게 자신의 직무적 이해충돌을 밝혀야 함

 **예시 직무적 이해충돌의 공개**

본 보고서의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선우OO은 OO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OO제약 (무보수) 사외이사로 활동 중임

☑ **(지적 이해충돌)** 연구자는 필요에 따라 지적 이해충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축소 또는 회피해야 함

• **(회피가 바람직한 경우)** 자신의 종교, 신념, 학문적 입장, 정치적 성향 등이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시 지적 이해충돌의 공개**

1. 본인 최OO은 심사대상인 원고와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본 원고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없으므로 심사위원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2. 본인 신OO은 교수 후보자 윤OO이 평소 주장하고 있는 신념과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교수 임용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심사위원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 **(공개해야 하는 경우)** 학술지 심사나 고용, 연구비 심사 등에서 지적 이해관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할 수 있는 경우
- **(공개하는 대상)** 학술지의 경우, 편집위원회, 발행인 등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고용이나 연구비 심사는 관련 기관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알려야 함

## 2 연구자의 의무와 책임

- 연구자는 기관이 주최하는 이해충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교육을 요청해야 함
- 이해관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해충돌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함

### 예시 이해충돌 신고서(Disclosure of Conflict of Interest)



본 내용은 집필진이 참고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므로 연구기관 등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기관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 1. 신고자 정보

성명	
소속(학과/부서)	
직위/직책	
연락처(전화/이메일)	

#### 2. 연구/업무 관련 정보

연구/과제명 또는 업무명	
해당 연구(과제) 기간	
연구비 지원기관(해당사)	
연락처(전화/이메일)	

#### 3. 이해충돌 내용

해당되는 이해관계 유형에 체크(✓)해 주세요. (중복 선택 가능)

- 재정적 이해관계(예: 주식, 지분, 자문료, 보수 등)
- 인적 이해관계(예: 명예, 승진, 특허, 직위 등)
- 가족·친족·지인 등 특수관계인 포함
- 직무적 이해관계(예: 외부 기관 겸직 또는 자문)
- 지적 이해관계
- 기타 이해관계

#### 4. 구체적인 이해관계 내용 및 상황 설명

(예: 연구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배우자가 연구과제 참여 중 등)

#### 5. 이해충돌이 연구/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예: 연구결과의 객관성 저해 우려, 평가심사 관련 영향 등)

#### 6. 본인의 의견 또는 제안(회피, 역할 축소, 공개 등 회망 관리방안)

본인은 위의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일:  
서 명:

### 체크리스트 예시(연구자용)

이해충돌 종류   연번	질문	예	아니오	
재정적 이해충돌	1	소속기관 외의 기관, 기업, 단체로부터 직접적 금전적 이익(연구비, 급여, 자문료, 강연료, 회의비, 장학금 등)을 받았는가?		
	2	소속기관 외의 기업/단체로부터 주식, 스톡옵션, 유가증권, 소유권, 특허권, 실적권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가?		
	3	기업/단체로부터 연구인력, 장비, 시설, 재료 등의 지원을 받았는가?		
	4	연구 관련 기관의 이사직, 고문, 임원 등 공식/비공식 직책을 맡았는가?		
	5	연구자 또는 배우자·직계가족이 연구 관련 기관과 위와 같은 경제적 관계가 있는가?		
	6	자신이 보유한 지분이나 주식과 관련된 기업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했거나 연구비를 지원받았는가?		
	7	공식 절차(소속기관 협약/신고) 없이 외부 자금, 장비, 인력을 지원받았는가?		
창업 관련 이해충돌	8	교원창업 또는 소유기업에서 소속기관 인프라를 사용하거나, 학생, 연구원을 참여시키고 있는가?		
인적 이해충돌	9	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나 친밀한 관계자(친족, 연인 등)를 연구과제에 참여시켰는가?		
	10	연구 관련 평가·고용·감독 등에서 친인척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가?		
직무적 이해충돌	11	소속기관 본연의 임무(연구·교육 등)를 소홀히 하거나, 외부활동이 과도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12	소속기관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지적 이해충돌	13	자신의 이론적 신념, 종교·철학적 신념이 연구, 심사,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14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 논문이나 연구의 심사평가를 맡고 있는가?		

•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문항이라도 "예"인 경우, 소속기관에 "반드시" 이해충돌을 신고해야 함

체크리스트 예시(기관용)

이해충돌 종류	연번	질문	예	아니오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1	연구자 또는 가족이 외부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가?		
	2	주식, 지분, 권리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연구과제와 관련되어 있는가?		
	3	동일 주제로 중복 연구비 수령 또는 이중 연구수행이 있는가?		
	4	소속기관이 아닌 경로로 연구비, 장비, 인력 등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교원 창업	5	교원창업 또는 소유기업에서 소속기관 인프라를 사용하거나, 학생 연구원을 참여시키고 있는가?		
	6	소속기관 인프라(기술, 장비, 인력)를 창업기업에 활용하고 있나?		
인적 이해충돌	7	사적 친분 또는 적대 관계로 인한 고용, 평가, 감독 등에서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		
	8	연구과제, 평가, 고용 등에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9	특수관계인 연구참여자로 등록/채용되어 있는가?		
	10	대체 불가성(객관적 입증자료, 공고문, 전문가풀 부족 등)이 명확히 입증되었는가?		
	11	전문성(학력, 자격증, 실적, 현장경험 등)이 명확히 확인되었는가?		
	12	연구수행 필요성(핵심 역할, 대체 불가, 일정·성과 필수 기여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는가?		
	13	역할 배분, 평가 권한 등이 공정하게 분리·관리되어 있는가?		
직무적 이해충돌	14	직무적 이해충돌(겸직, 외부활동 등)이 본연의 임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15	연구자가 외부기관의 자문, 심사, 평가 등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하고 있나?		
지적 이해충돌	16	지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용이나 심사에 관여하고 있는가?		

•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문항이라도 “예” 인 경우, 이해충돌심사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해야 함

부 록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가 함께 수립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차 개정판(2021. 8. 11.)을 발췌하여 수록하오니, 연구자 및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

1. 개요

-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제안합니다.
  - \* 본 권고사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 최소한 설정하였으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2.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 연구 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은 <붙임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 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 연구노트 기록 및 보관은 연구자 소속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202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을 참고(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
  - 공저 논문 발표 전 :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계획 보고 양식은 <붙임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수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3.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 소속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또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연구 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주요 확인 사항(예시) : 특수관계인의 활동계획, 이해상충 문제, 연구실 안전 등
  - 연구 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연구 참여를 통해 작성한 연구노트, 연구실 출입기록 등을 소속 연구자가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공저 논문 관리 :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들에 대한 서지사항과 논문 원문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

- 1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4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6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7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참고 1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예시)

본 양식은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기관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하는 양식을 예시로 제시한 것입니다. 연구기관 등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기관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 □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A(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 특수관계인의 유형(해당하는 모든 란에 V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 특수관계인의 연구과제 참여 목적(해당 < > 란에 V 표시하고 간략히 기술)

단순히 연구에 참관하고 배우기 위한 것 (논문 작성과 무관) < >	2. 연구에 참여하여 본인의 아이디어 구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참여) < >

####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역할 및 활동계획

\* 필요 시 연구계획서 등 상세계획 첨부

참고 2

###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예시)

본 양식은 연구자가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 또는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양식을 예시로 제시한 것입니다.

연구기관 등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기관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 동료평가(Peer Review)를 받는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 논문 등

\* 본 양식은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결과보고서(합의중, 한국유통과학회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2019)를 참고하여 만든 것입니다.

□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참여연구원 A(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의 유형(해당하는 모든 란에 V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학술대회(conference)		학술지(Journal)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학술대회 명: - 발표논문명: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참여저자:		- 학술지명: - 논문명: - 논문 투고 예정일: - 참여저자: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서술

□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계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 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원고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 주의사항: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과 연구과제 계획서에 표기된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 <저자간 합의 사항>

구분	연구계획	연구수행	원고초안 작성	최종원고 확정	전체 기여도	확인 서명
저자 A	( )%	( )%	( )%	( )%	( )%	
저자 B	( )%	( )%	( )%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	
계	30%(*)	40%(*)	20%(*)	10%(*)	100%(*)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연구윤리 확인내용(예시)

항목	내용(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 A, 공저자는 저자 B, 저자 C(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합니다.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 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 A가 하였고, 이를 저자 C가 보완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저자 성명	저자 A	저자 B	저자 C(특수관계인)
확인 서명			

참고 3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본 양식은 연구자의 미성년 특수관계인이 논문 또는 과제에 참여할 경우 소속기관에 제출하는 서약서 양식을 예시로 제시한 것입니다. 연구기관 등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기관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OO대학교(또는, OO연구원)의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책임있는 연구를 통해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OO대학교(또는, OO연구원)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며, OO대학교(또는, OO연구원)가 본인의 입학 대학(해외 대학 포함) 또는 지원 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2조 제1항>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연구참여자: (서명)  
(확인자) 참여 학생의 학부모: (서명)  
(서약자) 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자: (서명)

## 대학연구자와 연구관리자를 위한 이해충돌 길잡이

기획·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법무팀

발행·인쇄일자 2025년 11월

발행처 한국연구재단

디자인·제작 전우용사촌(주) 02-426-4415

집필 이효빈(대학연구윤리위원회 사무총장)

자문 이해미(연세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전문위원)  
조진호(서울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전문위원)  
김옥범(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고희경(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오길영(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실)

검수 이원용(연세대학교 교수)  
황은성(前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이 책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에 있으며, 무단으로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의 허락 없이 판매하는 등의 영리행위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내용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